경기도 공고 제2025-5407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변경 공고

경기도 공고 제2025-5220호(2025.2.28.)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)의 변경 사항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7일

경 기 도 지 사

상 호 (대표자)	소재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변경내용		근거법령 및 변경 사유
			당 초	변 경	
부성종합건설 (주) (김종락)	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213번길 46, 201호	토목건축 공사업 (10-5053)	영업정지 ('25.3.4. ~ '25.7.3.)	영업정지 ('25.3.4. ~ '25.6.19.)	건설산업기본법제84조 (대표자의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감경)